첨단융합대학 학부(전공) 졸업 논문제 시행 관련 졸업논문 내규 (2025.4.2.)

첨단융합대학

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신소재·반도체공학전공 졸업논문 내규

제 1 조(목적)
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첨단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신소재·반도체공학전공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논문제출 자격)
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포함)로 한다.

제 3 조(논문작성 및 제출시기)
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.

제 4 조(논문형식)
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.

제 5 조(논문 지도교수 배정)
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.
② 캡스톤디자인 발표를 위하여 3학년 1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두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1, 2를 수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(논문심사)
실기 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,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.

제 7 조(준용규정)
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, 장기인턴쉽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 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.

제 8 조(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)
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.

제 9 조(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)
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,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서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반도체·디스플레이공학전공 졸업논문 내규

제 1 조(목적)
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첨단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반도체·디스플레이공학전공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논문제출 자격)
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포함)로 한다.

제 3 조(논문작성 및 제출시기)
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.

제 4 조(논문형식)
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.

제 5 조(논문 지도교수 배정)
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.
② 캡스톤디자인 발표를 위하여 3학년 1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두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1, 2를 수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(논문심사)
실기 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,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.

제 7 조(준용규정)
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, 장기인턴쉽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 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.

제 8 조(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)
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.

제 9 조(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)
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,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서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(적용대상) 차세대반도체융합공학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전공의 경우 2025-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바이오신약융합학부 바이오나노공학전공 졸업논문 내규

제 1 조(목적)
이 내규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논문제출 자격)
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포함)로 한다.

제 3 조(논문작성 및 제출시기)
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.

제 4 조(논문형식)
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치한다.

제 5 조(논문 지도교수 배정)
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.

제 6 조(논문심사)
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,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.

제 7 조(준용규정)
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, 장기인턴쉽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대치물을 제출하도록 한다.

제 8 조(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)
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.

제 9 조(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)
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,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서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